

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, '서울안전앱' 으로 지켜주세요!



서울특별시



수 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「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돌봄시설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

1. 「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입법예고 대상) 및 제7조(예고방법)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 드리오니,

2.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(부서)에서는 2018.9.5.(수)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기간 : 2018. 8. 16(목)~9.5(수) 20일간

나. 예고방법 :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(<https://legal.seoul.go.kr>)게재

다. 의견제출 서식

제정안	검토의견	사유

붙임 1.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(안)입법예고문 1부.

2.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관과01-155, 서구1-25, 서사01-41, 서울시출연기관,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의정담당관), 서울특별시의회(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), 서울시투자기관,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,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, 서울시노인복지협회

주무관 **김혜연** 요양보호팀장 **신종철** 어르신복지과장 08/22 **유미옥**

협조자

시행 어르신복지과-15083 (2018.08.22.) 접수 법무처-21229 (2018.08.24.)

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/

전화 02-2133-7419 / 전송 02-2133-7419 / 13youny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